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8다248275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홍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티머니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범진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5. 선고 2017나2040809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시행령(이하 차례로 '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선불전자지급

수단이 자금세탁 또는 속칭 '카드깡'에 사용될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확인되는 것(이하 '기명식'이라 한다)과 그 이외의 것(이하 '무기명식'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행권면 최고한도와 양도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법 제18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이용자의 즉각적인 사고 신고를 유인하고 동시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신속한 사고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3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그 전의 것은 이용자가, 그 후의 것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법 제10조 제1항 단서와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제9조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현금과 유사한 성질이 있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분실·도난 신고를 받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분실·도난 통지를 하기 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 관련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체결한 경우에는 분실·도난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문언상 기명식과 무기명식을 구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그 특성에 비추어 기명식이든 무기명식이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면책시키는 약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10조 제1

항 단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는 기명식과 무기명식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서는 기명식과 무기명식을 구분하지 않고 법 제 1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서버에 등록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머니 카드에 대해서도 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의 유효성

원심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조항은 결과적으로는 카드 소유자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제한하지만 그 자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호에 정해진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1항에 정해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은 티머니 카드 소유자가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를 대비하여 그 위험부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카드 소유자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이 결과적으로 카드 소유자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이나 제9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유를 갖추지 못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